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행정관리국	제3조(국의 설치) 행정국
제5조(행정관리국)	제5조(행정국)
① 행정관리국	① 행정국
② 행정관리국장	② 행정국장
1~19(생 략)	1~19(현행과 같음)
20. <u>옥외광고물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0. <u><삭 제></u> 21. <u>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u>
제7조(생활복지국)	제7조(생활복지국)
① <u>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u>	① <u>환경과 및 청소과</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u>청소년 복지·청소년 지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u>	4. <u>아동보호에 관한 사항</u>
5~13 (생 략)	5~13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교통국)	제9조(건설교통국)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9(생 략)	1~19(현행과 같음)
<u><신 설></u>	20. <u>옥외광고물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u>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03. 5.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4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5월 12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95회(임사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3. 5.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제정이유

-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고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20조(보험·공제등에의 가입)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안 제3조제2항)
- 보험료 지급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법령 2003. 3. 26부터 시행)
- 예산조치 : 2003년도 예산 기 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홍수)

2002. 12. 31 인감증명법이 개정되고 2003. 3. 26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인감증명발급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에 의거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도, 저당, 담보시 제출하는 인감증명발급과 관련된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매우 커 이에 정부에서는 인감증명발급에 대하여 전산화함으로써 인감증명발급업무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인감발급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같이 발급해 주고 있으며 종전처럼 인감·인영의 확인사항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만, 인감증명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정확히 하고서 발급해주는 확인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뀐 것은 인감·인영의 전산화로 위조여부 확인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 다만 인감증명의 수요처에서 인감·인영의 확인이 확실히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전환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43
----------	----

제출년월일 : 2003. 4. 28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고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등에의 가입)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법령 2003. 3. 26부터 시행)
- 나. 예산조치 : 2003년도 예산 기 편성
-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